

좌담: 북한동포 돕기,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 일 시: 1997년 2월 15일(토) 오후 14:30~16:00
- 장 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
- 참 석: 박창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족화해와일치위원회 위원장)
백승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국장)/ 사회
법 른(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백: 약 2년 전부터 수재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함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해가 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심해져서 올해 들어서는 아사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대규모 아사 사태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있을 수 있는 자연재해의 결과라고 보기도 했으나, 지금은북한의 농업 구조,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경제력의 감퇴, 나아가 북한 체제의 한계까지도 거론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반쪽인 북한 체제가 인민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된것은 우리에게도 풀기 어려운 화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례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민간 차원의북한 동포 돕기가 차츰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국가 차원, 국민 차원에서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효과적인 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황장엽 비서의 망명 후에 공개된 그의 편지에도 나와 있던데, 북한의 식량 사정이 외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북한 동포 돕기를 하

면서 알게된 북한 식량난의실상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저희가 2년 전에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실상을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통일원 측의 이야기가 다르고, 비정부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유엔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실상을 알기 힘들었는데, 어떤 자리에서 한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에 2천 3백만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곡물이 약 550만에서 600만톤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의 생산량이 그보다 훨씬 적은 400만톤 정도이기 때문에 홍수가 없었더라도 약 150만톤에서 많게는 250만톤까지 부족하다는 얘기였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북을 왔다갔다하는 외국의 민간단체들의 보고서들을 통해 하나 둘 북한의 실정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한 식량난의 한 단편적인 사례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중국 연길 쪽에 갔다가 차를 빌려가지고두만강을 따라 백두산 쪽으로 본격적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산 참쌀떡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두만강 건너편에 북한 군인 두 명이 걸어가느 걸 봤어요. 차에서 내려서 부르니까 그 군인들이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누구 만나려는 게 아니라 마침 떡을 가지고 있는데 주고싶

어서 그런다고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겨울 한복을 입고 있어서 건너오지는 못하고 하더라고요. 두만강 상류 쪽은 폭이 10m정도밖에 안되니까 불령하듯이 찰떡을 던져주었죠. 물론 그들이 우리가 남쪽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지푸 말을 거니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인사를 보내더라고요. 경계심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추측되는 군인들이 우리가 주는 떡을 받는 걸 보고 놀랐죠.

백: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부족분이 150만톤 정도 되는데, 홍수 피해로 인해서 약 150만톤 정도의 손실이 추가로 생기는 거 보니까, 작년에는 약 250만톤 정도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의 소요량을 550만에서 600만톤으로 잡으면 300만에서 350만톤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지요. 95년의 홍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도 다시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식량난이 더 가중되고 있고, 특히 재고량까지도 바닥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연변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는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집안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 국경선을 따라 만포 가까이까지 가봤어요. 만포에서 생산된 물품을 실어서 서해로 내려가는 항구가 강변에 있는데 항구 기능이 전부 정지되어 철골이 녹슬어 있고, 맞은 편에 큰 화학공장이 있는데 가동이 중단된 지가 4년이나 되었다고 해요. 강가에 어린아이들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 아프리카 난민처럼 바짝 마른 애가 앉아 있었어요. 배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하고 땅만 보고 돌멩이를 때리고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돌보며 경험한 바로는 관심을 가져주면 뭘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그애들은 불러도 대답도 안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체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만큼 그렇게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강변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통제가 허물어지고 있는현실의 반영

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애들이 배고프면 뭐든지 받을 텐데 고향을 지르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아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영향이 그대로 미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제가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북한 동포 돕기에 전력투구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입니다. 지난 12월에 연변 지역에 갔을 때 북한에 갔다는 사람들, 북한 쪽에서 연변으로 친지 방문을 왔던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그리고 이쪽 출신으로 북한에 가서 구호물품을 나눠준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아프게 들었던 얘기는, 그전부터도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식량 배급이 거의 안 되니까 젊은 사람과 어린애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인들이 굶어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지난 50년대에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 우리 동포들이 애들을 살리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동포들의 지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같은 동포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이에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우리를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의 물건 훔치는 도둑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생활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식량 배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생존하느냐고 물으니, 물론 그 말이 다 믿기지는 않지만, 훔쳐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들은 얘기로는 함경북도 나진에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아들하고 어머니가 전화선을 잘라 팔아먹다가 들켜서 공개총살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리는데, 이 굶주림의 비참함이 아프리카라든지 인도에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데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어렵다 못산다는 정도라면 알고 있지, 실제로 굶어죽어가고 있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서: 몇 주 전에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은 230만톤 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모자라는 것 같고, 유엔의 조사라는 것이 북한 정부가 하는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2월말에 연변에 가서 제가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어느 국경 도시에 있는, 직원이 450명 정도가 되는 기업소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열다섯명이 굶어죽었다. 그런 정돈데 만약에 그런 비율로 계속 굶어죽게 된다면 1년에 인구의 10%가 굶어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추수를 몇 달 앞두고 그랬다면 이상하지가 않을 텐데 추수하고 나서 2, 3개월 동안에 그랬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알아 봤더니 알갱이가 채 영글기도 전에 다 따먹어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1995년 여름에 엄청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이여물기를 기다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옥수수고 감자고 콩이고 줄기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정보에서 6톤의 옥수수를 수확했던 땅에서 500Kg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지금 북한의 실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평양이라든가 특수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는 - 물론 농촌은 좀 다르죠, 농촌은 협동농장을 해서 식량을 비축하니까요, 그 외의 배급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역에서는 - 작년 수확기에 짧으면 한 주일 길면 두 주일정도밖에 배급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배급이 전혀 안 되니까 이로 인해서 북한의 기업, 학교, 탄광 같은 1차산업이 전부 마비되었다. 그래서 마비상태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첫째는 농민 시장이 만들어져 자생적인 물물교환시장이 형성되었는데 당

국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통행의 자유가 가능해졌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헤매는 것을 정부가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중앙 배급이 끊기니까 지역의 도당위원장, 시당위원장 책임 하에 어떻게 해서든지 식량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연변 지역 등 외부로부터 식량의 직접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에서의 식량 지원도 북쪽의 특정 지역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했다고 봅니다.

백: 그럼 이어서 이 자리에서 완벽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이 왜 이렇게 악화되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지요.

법: 북한 식량난에 대해 분석한 글들을 보면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평야가 적고 산악지대가 많아서 근본적으로 자급자족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600만톤 정도의 식량 소요량이라면 정상적인 생산량이 450만톤에서 500만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0만톤에서 150만톤 정도가 만성적 식량 부족분이라고 해요. 90년 이전에는 북한은 150만톤 정도의 부족량 중 100만톤 정도는 수입해서 메꾸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거의 헐값에 들어오던 유류가 끊김으로써 산업의 80% 정도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동차든 배든 공장이든 기름이 없어서 못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량을 수입할 의욕이 없어 식량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식량 사정과 산업 생산이 어려워지던 차에 94년도의 우박 피해, 95년도의 대홍수 피해가 겹치면서 150만톤 정도의 식량 유실이 있었다고 하니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 홍수피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100년만에 최고로 비가 많이 온 것이 문제

가 되고요, 7, 8월 두 달 동안의 강수량을 보면 어떤 지역은 1,260밀리가 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650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5년 전부터 식량난이 가중되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식량을 자급한다고 산 중턱까지 계단식 밭을 만들었으며 또 땀감으로 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 민둥산을 만들었는데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자 산사태가 나버린 거지요. 일부 외신 보도에서 피해 지역을 모리타니사막 같다고 표현할 만큼 전 들판을 80cm 정도로 자갈과 모래가 덮어버렸답니다. 이게 복구가 불가능한 거죠. 게다가 양식 부족으로 힘이 없으니까 노동력도 부족하고, 기름이 없어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데 곡괭이하고 삽 갖고는 복구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역 봉쇄로 인해서 식량 수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래서 급격하게 어려움에 처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자체의 힘으로는 식량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국제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적인 지원이 긴급하게 첫째는 식량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류의 지원, 더 나아가서는 자본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북한 자체도 개방을 해서 외자를 유치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쌀 지원이든 자본의 지원이든 국제사회가 같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특히 남한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대북지원이 있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북한 농업의 개혁도 절실한데 첫째는 적어도 중국 정도로는 토지의 개인 경작을 인정해서 개인의 생산 의욕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 둘째는 4, 5십년간 잘 안 되어왔던 품종개량에 힘을 쏟아 박토에서도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종자들을 개발해야겠고요, 세 번째로는, 에너지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데 큰 비료공장

이 다 멈춰버려서 비료를 거의 못주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백: 나머지 두 분께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는 지...

서: 정리를 잘해주셔서 덧붙일 말은 별로 없는데,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식량난이 불가피한 의적요인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내부적인 체제 모순의 결과냐 하는 거지요. 결국은 둘 다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비디오를 볼 것 같으면 집단농장은 황폐해져서 아무 것도 수확이 안되는 데 바로 옆에 있는 개인의 텃밭에서는 지붕 높이를 넘을 정도로 야채와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땅만 나누어주더라도 농업 생산량을 거의 배 가까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결국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 서목사님께서 북한 체제의 대폭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체제가 현재 웬만큼 기능을 하고 있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체제 변화가 오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의 지원이 불가결한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큰 몫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남한이라는 데는 참석자 모두가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자의 체험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북한 돕기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 제가 천주교를 대표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천주교 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에 북에서 홍수가 난 다음에 그 소식을 접하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들이 모여서 빨리 모금을 시작하자고 결의를 했죠. 그래서 그해부터 모으기 시작을 했고 다른 사제들도 그룹별로, 개별적으로 모금을 시작해서 꽤 널리 모금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굶는 사람들을 일단 먹이고 보자는 호소가 먹혀 들어가고, 잘 살든 못 살든 신자들이니까 인도주의적인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호음이 있었어요. 그런 대로 모금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인공기사가 이 터지고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선화와 창구단일화 정책이 모금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일반 신자들, 특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자들은 정부에서 원치 않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죠. 또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군량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 라인을 통해서 보내는 쌀은 정확하게 민간에게 전달된다, 수령인의 손도장까지 찍어서 확인한다고 상세히 얘기를 해도 군량미 전용설의 부정적 영향은 쉽게 극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만 자동차 부품 가게를 한다는 젊은 부부가 북한 동포에게 쌀 100가마를 보내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3천불을 들고 와서 전달을 부탁하는 걸 보니 참으로 감격스럽더군요.

성금의 전달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창구단일화 정책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식용유나 밀가루를 전달하는 방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국제구호기관을 통해서 직접 쌀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뭐라 할 지 모르겠으나, 사실 정부에서도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추기경을 비롯해서 주교님들도 다 아시는 거지요. 저희가 어려웠던 게 신자들에게 모금을 할 때는 북한 동포에게 쌀을 보내자 해서 모아 놓고 쌀이 아닌 식용유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성직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였죠. 성금은 기탁자의 의도에 맞게 써야지 윤리적으로 맞는데, 쌀을 보내달라고 준 돈으로 식용유나 밀가루를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을 보내는 것을 병행했습니다.

법: 불교에서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부분적으로 모금을 했고 가톨릭처럼 교단 차원에서의 모금운동은 없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중국에 가서 북한의 어려움을 실감한 뒤 귀국하자마자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불교 전체 차원에서 전개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9월에 잠수함 사건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요. '도와주면 먹고 쳐내려 온다' '반공교육을 더 받아야겠다'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허필이면 북한을 돕는다' 등등 거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처참한 실정을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은 몰랐으면서 북한 동포 돕기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현재 불교계의 30여개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우리 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를 만들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한민족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모금을 하고 있지요.

고졸 출신 공무원은 월급이 100만원 정도 될 터인데 매월 20만원씩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우 자동차의 한 모임에 가서는 '당신들 학교 다닐 때는 통일운동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적어도 연말 보너스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 몫으로 돌려자'고 했더니 십여명이 보너스에서 10만원씩을 떼어 보내왔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주변에서 북한 동포를 위해 돈을 내는 데 인색한 게 사실인데, 제 경험으로는 북한에 대한 거부 반응보다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알게 되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금한 돈을 저희는 적십자사로 기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탁한 돈으로 분유를 사서 보낼 것 같아요. 쌀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양

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옥수수 가루로 보내자면서 모은 돈인데 적십자사가 일방적으로 분유를 보내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서: 분유는 북한 어린이들이 소화할 수 없어요.

박: 분유를 먹으면 설사한다고 해요.

법: 식량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면 훨씬 싼 값으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는데 굳이 비싼 국산을 고집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박: 한적의 보고서에는 품목별 구입 단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네요.

서: 한적의 품목 선정과 구입 가격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독교 쪽의 움직임이 제가 설명해 보죠.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데 남북나눔운동이란 게 있고, 또 사랑의 쌀보내기운동도 있었고, 선명회가 북한에 국수공장을 가동 중이지요. 기아대책기구, 한민족의료선교회, 북음주의협의회 등도 북한 돕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북한을 지원해온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교회는 몇 년째 매달 1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거지요.

근자에 와서는 이런 다양한 기구와 교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한국기독교식량은행이 출범했습니다. 이 기구는 한국의 교회들이 통일에 대비하여 적금을 들게 하고, 필요한 때마다 북한에 긴급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회들로부터 1천억원 정도의 약정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쪽 모금기구들은 한적으로의 창구단일화에 반대하고 창구다원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북음주의협의회는 정부의 사법처리 대상으로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작년 여름부터 주로 회원들 사이에서 북한 쌀돕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회원들이 돈을 모아 반년 가까이 정부에 대

하여 북한에 쌀을 지원하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측에서는 대북 지원 3원칙, 즉 정부는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다, 창구는 적십자사로 단일화해야 한다, 쌀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청와대가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밀가루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공식적 지원을 실행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민간기구의 대북 지원도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 뿐더러 국제적인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북한의 식량난은 전세계적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미국의 민간단체와 국무부 대표들이 대북 지원에 관해 공동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전세계에서 북한 지원에 반대하는 집단이 오직 둘인데 하나는 미국 공화당, 다른 하나가 한국 정부라는 것이죠. 국내에서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수긍되는 면도 있어요. 식량 지원을 무기로 해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논리는 어떻게 들으면 그럴 듯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세계적으로 북한을 도우려 하는데, 왜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가 자기 동족을 도우려는 것까지도 막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과 정부의 위신이 추락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 변호사는 실정법적으로 말하자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모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더라고요.

박: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해야 할 조치나 노력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지원에 나설수 없다고 하는데 이 점도 고려하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서: WFP(세계식량계획)가 각 나라에 대북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작년에 준하는 300만불 정도는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는 우리 나라가 이디오피아나 우간다를 도울 때 내는 미미한 액수지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정부가 지원한 15만톤 쌀의 일부가 실제로 군량미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식량이 탄환이 되어 돌아온다는 보수층의 주장에 정부가 소극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남한 쌀이 군량미로 보급되자 북한 군대의 전투 의욕이 형편없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군량미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댈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두번째로 북한을 코너에 몰아서 고립·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북한을 거꾸로 단결시킬 뿐입니다. 지금의 대북정책은 남한에 대한 증오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식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세번째로 북한이 남한을 대등한 상대로서 인정도 안 하고, 정식으로 요청도 안 하는데 먼저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형식논리입니다. 이는 국제관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지요. 그런데 이런 형식논리는 북한 정권이 정상적이라는 전제에서만 타당한 것이지요. 워낙 비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남한 정부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주체성이 부족한 탓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한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대북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박: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펼쳐야 합니다. 당리당략이나 정권 유지에 이용하면 안됩니다. 깜짝쇼를 펼치기 위해 국회하고도 상의 없이 쌀 15만톤을 보내 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군량미로 쓰여진 확증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대북 쌀 지원 절대 불가를 말합니다. 어련에들 사이에서는

‘아니 뭐 해주면 사랑 하나 줄게’ 하는 수작이 통하지만 남북관계를 그런 차원에서 풀면 안되지요. 남한 정부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할 상황이라면 민간 차원의 지원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데 막아서는 안되지요.

법: 정부의 자의성이 문제지요. 한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쌀을 지원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부는 왜 쌀을 15만톤이나 줬느냐 하는 거죠. 우리 민간단체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정부가 원칙 없이 왔다갔다한다고 해서 우리 민간단체마저 이리저리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돈을 갖고서 북한 식량난 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다 보니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지 창구다원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서: 정부의 정책을 크게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부가 쌀은 안된다고 하니까 쌀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쌀보다는 옥수수나 밀가루를 보내는 것이 더 낫지요. 현재 북한에게는 질보다 양이 더 급하니까요. 하지만 한적으로의 창구단일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쌀은 안된다는 논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법: 톤당 가격 차이가 적다면 쌀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박: 북한에서도 질보다는 양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밀가루 보내기가 더 힘들어 양이 조금 줄더라도 쌀로 보냈습니다.

법: 어려운 실정을 가능한 한 덮어두려고 하는 북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참한 실상을 전세계에 생생히 알려야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요. 또 우리 정부가 군량미 전용을 거론하는데 굶주리는 북한 군인도 먹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창구단일화가 논란이 되어 왔는데, 북한의 경우 국가 배급 체계가 상당 부분 마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중앙 정부에서만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상태가 아닙

니다. 각 시·도에서도 요청하고 있어요. 북한이야말로 창구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구를 다원화하면 오히려 북한 정부가 위협을 느끼지 남한 정부가 위협을 느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창구단일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에 맡겨 놓을 문제이고, 민간단체끼리 협의해서 창구를 하나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법: 북한 동포 돕기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이 될 터인데 지금의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법: 저는 북한 체제가 어떻든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렇게되면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부로서 취할 당당한 외교 방식이지 4자회담을 말하면서 미국의 공무니만 쫓아 다녀서는 안됩니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북한 사회를 개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사 북한의 현재 정권이 무너져도 남과 북이 동포애를 교감하면서 평화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서: 아까 군량미에 대해 말한 것을 조금 더 보충하자면 군량미에 관한 토론이 무의미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군대를 먹여살릴 양으로는 충분합니다. 남한 쌀이 군량미로 돌려지지 않더라도 다른 쌀이 가게되어 있습니다. 군량미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군량미에 관한 알파한 토론에 대북정책이 좌우되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북한 동포 돕기에는 여러 단체들이 동참할 것인데 그들의 이념적성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당연히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도 다를 것인데 각자의 이념적 입장과 북한 동포돕기를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을 중심으로 북한 동포 돕기를 벌여 나가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국제 NGO 사회에서 북한의 국가 배급 체계

를 사용하는 것이 좋나 아니냐가 논쟁거리입니다. 해외의 NGO는 국가배급 체계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의 NGO들은 식량 전달의 투명성을 더 강조하는 편입니다.

법: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지요. 북한이 대만 핵쓰레기를 수입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박: 기본적으로 대만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가진 자의 잘못입니다.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산업쓰레기를 많이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 시세로 쌀이 운송료,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톤당 270불 정도인데 북한의 부족분을 200만톤으로 잡으면 5억불, 4천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 각자가 1년에 1만원 내기 운동을 하면 4천억원을 모을 수 있는데 그 돈이면 북한식량문제도 해결되고 핵쓰레기 수출 문제도 해결됩니다. 4천억원이라 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지요. 하지만 한보에 쏟아부은 게 5조원이고 그거면 북한 주민 2천3백만을 10년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법: 핵쓰레기는 수출해서도 수입해서도 안된다는 기본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핵쓰레기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핵쓰레기로 인한 죽음은 몇십년 몇백년 뒤의 상황이지만 지금 당장 굶어죽을 판인데 무언들 수입하지 못하겠습니까? 핵쓰레기 수입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식량 지원을 통해서 핵쓰레기수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진보적이라는 노동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몫만 늘리려는 이익집단이 아니라면 이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 북한 동포 돕기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핵쓰레기 수입에 반대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쓰레기 반대운동과 북한 동포 돕기운동

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쓰레기 문제와 상관없이 북한 동포 돕기를 위한 민간의 노력을 꾸준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저는 월남한 사람들을 북한 동포 돕기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북5도민회' 쪽과 접촉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반공적이 아닌 사람은 다 빨갱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김정일 체제를 반대하기 위해, 즉 반공을 위해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반공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 동포 돕기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반공이테올로기가 지배하는 국내 여론의 대세를 잡아내야 정부를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언론과 기업은 북한 돕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언론과 기업의 목줄을 쥐고 있으니 길거리 모금 등 미미한 행동 밖에는 못합니다. 노조가 북한 동포 돕기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자기들 현안에 묶여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노조를 향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과 중산층 인텔리들에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과 언론을 옥죄는 상황을 푸는 데는 특히 보수적인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 그럼 마지막으로 통일운동과 북한 동포 돕기를 연결시켜 말씀들을 해주시지요.

법: 통일을 하려면 먼저 화해를 해야 하고 화해를 하려면 가장 어려울 때 먼저 도와야 합니다. 북한이 곤경에 처한 지금, 북한 동포 돕기운동은 통일운동의 출발점이고 나아가 통일운동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북한 동포 돕기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꼬여 있고 우리 정부 당국이 대북 지원에 소극적인 현실에서 북한 동포 돕

기의 물꼬를 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종교계에서 신앙적 양심으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크게 벌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야 특히 노동자, 농민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북한 동포들을 돕겠다고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부끄럽게 하여 전국민이 나서게 해야 합니다. 저는 기층 대중 조직들이 통일운동의 관점에서도 북한 동포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적어도 월 100만원씩은 받을 것인데 이 중에 1만원씩을 떼다 하더라도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 1만원이면 굶어죽게 된 북한 동포, 즉 같은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정치를 바로 세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같은 노동자 살리는 일을 외면하는 것은 운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지요.

백: 통일운동이란 통일하는 연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쌓여 있는 불신과 증오를 푸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북한 동포 돕기는 좋은 통일운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 민간의 통일운동의 핵심은 바로 남북간의 나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나누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화해를 해야 하지요. 민간 통일운동은 나눔의 자세가 얼마나 충일(充溢)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어떠한 하면 북쪽 동포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강남의 어느 중학교에서 일일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통일을 원치 않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배가 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속한 우리 사회 중산층의 의식상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동포들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나눔운동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백: 긴 시간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청산 사업을 국민운동으로

박래군(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무국장)

1. 과거청산,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한 사업

지난 3월 1일 한 TV 방송에서는 「158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일본군 중군위안부' 할머니 돕기 방송을 한 적이 있다.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의 생활과 육성증언을 통해서 생생하게 중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힌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다. 전국에서 약 11만명이 전화로 이 기획에 참가한 것만 봐도 성공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된 지 50년이 넘었고, 정부 수립도 50년이 가까와 오는데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한스런 원한마저 아직껏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니 과거청산은 그야말로 산 너머 산이다. 그 많은 세월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권력과 부를 독식하면서 이 나라를 지배해 왔고, 피해자들은 인권의 세월을 감당해 왔으리라고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과거청산은 사실 희망찬 내일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사업이다. 과거의 잔재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며, 과거의 악행과 그로부터 파생된 고통을 넘어 미래의 희망을 건설하려는 노력이다. 과거를 올바르게 청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올바른 미래로 만들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 일제시대의 수많은 문제는 49년 반민특위가 이승만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후 지금까지 정리되지 못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독재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온갖 비리와 악행, 악법과 제도도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니, 오히려 '문민정부' 라고 하던 김영삼 정권마저 이제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 만을 만들어 놓은

채 1년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처럼 침침이 쌓여 있고 쌓여가기만 할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16일 발족한 「5.18 완전해결과 정의 실현, 희망을 향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약칭 과거청산국민위)」는 바로 이런 산적한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은 것이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우리 운동이 경험하지 못한 중요한 실험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첫째, 과거청산만을 자기의 본령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실험이다. 단일한 사건이나 개인의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청산할 총체적인 과거를 사업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런 광범한 범위의 과거문제 앞에 기가 질린다. 그야말로 사회 구성구석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문제로부터 이어져온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문제들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에서도 이런 과거의 문제들은 걸림돌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겠는데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 바로 과거청산이라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진보운동세력이 현안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대사업을 진행한 경험들은 많지만(그많은 공대위들), 이처럼 과거의 문제를 갖고 광범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연대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5.18국민위원회는 단일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였고, 5.18특별법이라는 성과를 쟁취하였지만,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초기부터 결합하여 진행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에 반해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초기부터 15개의 사회단체들이 결합하여 단일한 주제로 장기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실행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실험인 것이다. 이러한 실험이 성사될 것인지 여부는 사실 참여단체의 적극적인 결합 여부와 직결된다. 지난해 인권협에서 과거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실제 논의만 하다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역량이 작은 인권단체들만으로는 너무 힘에 벅거운 사업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약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서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면서 출발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며, 연대의 수준을 높여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2.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결성 경과와 사업계획

지난날 우리는 이 땅의 독재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등 공지의 명백한 범죄를 자행할 때, 그들을 용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추종하면서 찬양했던 어처구니없는 시대를 살아야 했다. 이제 그런 불행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모든 불의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 과거청산국민위 발족선언문 중에서

지난해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12.12 내란과 5.17 내란의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내란행위를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지만,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의 1, 2심의 재판은 광주학살에 대한 또 다른 진상 은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일단 5.18의 주역들을 내란 당사자들로 규정하는 이상 그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5공과 6공에 대한 정당성은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며, 이에 따라

불법행위로 정권을 장악한 이들이 재임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다시금 싸울 수 있는 초석을 확보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5.18특별법 제정까지 거세게 타올랐던 우리의 운동이 전, 노의 구속, 재판의 진행에 따라 점차 더 활기를 띠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강 국면을 그리면서 관심밖의 사안으로 떨어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이 2심 선고가 끝난 직후인 8월 29일 민교협과 민변이 공동으로 주최한 '12.12와 5.18 재판 평가와 과거청산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향후 5.18 사업 및 과거청산 사업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을 제안하게 된다.

그후 9월 6일 민변에서 제안하여 9월 17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광주 5.18공대위, 민가협,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인권센터, 민주법연, 목협 등의 사회·인권단체들이 10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5.18국민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개인의 결합이 아닌 단체의 힘을 실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합의했고, 발족선언을 2심 선고일인 12월 16일 기독교회관에서 갖게 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고문에 박형규, 김승훈, 강석주스님, 이돈명 변호사, 조아라 여사, 강희남 목사, 계훈제 선생을 모셨고, 상임공동대표로는 강신석목사, 김상곤 교수, 김상근 목사, 이창복 의장, 지선스님, 최영도 변호사를 선출했다.

곧이어 집행단위 구성에 들어가 집행위원장에 황상익(서울대 의대, 민교협) 교수를 집행위원장으로 뽑았고, 사무국을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업은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주로 두개의 사업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5.18문제와 관련해서는 ①5.18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모니터링, 재판 평가 자료집 발간 등 ②이번 공소에서 제외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운동 ③5.18 학술제

④사면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과거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①피해자 증언의 장과 피해신고센터 개설 ②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운동(5·6공 피해자 배상 입법운동과 집단소송) ③5·6공 수해자 서훈발달 운동 ④민관합동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운동 ⑤대선 공약에 과거청산작업 반영하기 ⑥과거청산 관련 국제연대 등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 단체 파견자들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하였고,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5.18특별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정책기획실, 5·6공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각 단체에서 파견되는 국민위원들과 개별 가입한 국민위원, 고문, 공동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오는 3월 19일 열린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통해서 사업내용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좌담회에서는 과거청산의 포괄범위, 의미 등에 대해 조명해 보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과거청산작업(정부와 진보세력 모두)의 한계를 짚어보려고 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의 경험들을 살펴보고, 국제인권법의 원칙, 국제법과 국제인권기구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런 논의들을 거쳐 대선 국면에서의 과거청산작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를 비롯해 과거청산의 전략과 전술을 논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과거청산국민위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후 과거청산운동을 본격화해 갈 계획인 것이다.

3.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까지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자체 계획만 있을 뿐이다. 각 단체에서 추천하기로 한 국민위원 명단마저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고, 각 위원회

에는 위원장과 간사만 정해져 있지 실제적으로 일을 함께 풀어갈 위원들이 없다. 각 위원회가 내실있게 제대로 사업을 진행시킬 때만이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원활하게 제 길을 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구하고 각 위원회가 이제 첫 발도 못 떤다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데는 우선은 과거청산국민위의 사업을 집행할 집행단위가 힘있게 일을 추진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발족 이후 불어닥친 날치기 파동, 한보사태, 황장엽 망명 등 매우 중대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과정에서 소속 단체들이 이 일에 힘을 싣기는 어려웠다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즉, 우리 운동은 즉자적으로 현안에 대응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오랜 시간 연구와 자료의 확보,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운동이 처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 "과거청산 작업이라는 크고 장기적인 목표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사업기조를 밝힌 대로 하루 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면 보다 여유있게 내실있게 준비해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회의 어느 한 구석도 과거청산이라는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는 - 이제는 미봉책이 통하지 않으므로 -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관심있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소박한 희망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기초대로 천천히 준비해 들어가면서 정세와 계기와 맞게 사업들을 진행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 인권유린을 낳았던 제도와 관행, 법률의 폐와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이를 통한 사회 전반의 화해를 통한 희망의 창출

이라는 과거청산국민위원회의 원대한 사업의 성패는 추상적인 목표들을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형상화해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 일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올해는 과거청산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삼을 수 있게 압력을 가하고, 차기 정권에서는 과거청산이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이슈로 떠올리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니,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 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사업에 대해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인 것이다.

앞으로 보다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민변 회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책을 부탁드린다.

6월 민주항쟁 10주년 사업의 의의와 목표

황인성(6월민주항쟁10주년사업범국민추진위원회 사무총장)

1. 6월 민주항쟁 10주년을 맞으며

올해는 한반도 남단을 뜨겁게 달구었던 87년 6월 민주항쟁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6월 민주항쟁은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 받아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군사독재체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사회 민주화의 분수령이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또한 그것은 정의로운 분노와 행동하는 민주주의식을 세계만방에 과시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자랑스런 사건이었다. 87년 6월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현실은 10년 전 우리가 꿈꾸었던 모습이 전혀 아니다. 특히 지난해 말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에 의해 저질러진 안기부법·노동법의 날치기 처리와 이에 뒤이어 터진 한보 부도사태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실현과 사회정의의 확립은 군사독재체제가 종식되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현실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지난 10년의 역사는 한 측면에서 보면 항쟁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를 하나하나씩 다 시금 빼앗긴 역사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대중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차근차근 갈아먹힌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는 철저하게 지역주의에 근거한 채 국민의 안락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집권에만 급급해하므로써

단지 국민의 불신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로 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경제는 국민대중의 물가고, 고용불안, 전세값폭등 등으로 인한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정관(政官)과 유착된 소수 재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오히려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WTO체제하에서 우리 경제가 과연 살아남을 희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전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와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분단상황의 극복이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민족사적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하의 진지한 노력은 남북한정부 당국자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남한정부의 경우 3년전의 김주석 조문파동과 올해의 황장엽 망명사건에서 보여 지듯이 현재의 분단상황을 단지 집권세력의 안정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데 급급한 근시안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상업적 소비문화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민대중의 소외감, 무력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범죄는 날로 광폭해지고 있으며, 교통·환경·주택 등 삶의 조건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중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속 시원히 대답하는 집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집권여당도, 야당도, 관료집단도, 독점자본가

그들도 이미 국민대중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은 각계·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 10년전 6월 민주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성숙한 시민역량을 재결집하는 것밖에 없음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해지고 있다. 성숙한 시민역량의 결집이야말로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원천이다.

2. 우리는 10주년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가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을 전개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고 거기에 안주하기 위해 10주년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현실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앞장설 국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계·각층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성숙한 시민역량을 재결집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국민대중에 꿈과 희망을 주고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집단은 6월 민주항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섰던 시민사회운동(=민족민주운동) 진영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사회운동진영은 10년 전 크게 하나 되어 승리했던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진영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는 6월 민주항쟁의 고귀한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배신행위에 다름아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진영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의 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에 기초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진지

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10년전 6월 민주항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앞장섰던 우리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지난 10년 동안 항쟁의 승리를 발판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노동, 농민, 교육, 학생, 청년 등등 각 부문운동의 전국적 대중조직이 결성되고 발전해 왔으며, 이는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구체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이 분화발전하게 되는데,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의 관심폭과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물론 6월 민주항쟁의 승리를 발판으로 각계·각층의 권리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정당한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지난 10년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 직후 찾아온, 대선에서부터 등장하여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계속되고 있는 분열이 그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이 국민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확고히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전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꿈과 희망을 상실한 국민대중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국민운동을 제창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상황은 시민사회운동진영에게 개별부문(또는 조직)의 일정한 성과에 자족하며 안주하는 것도, 과거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면에서 나서기를 주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번 10주년사업을 통해 시민사회운동진영이 항쟁 이후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활동에 대한 진지한 평가에 기초하여 다가올 21세기를 국민대중과 함께 꿈과 희망을 갖고 맞이할 새로운 비전을 만

들고자 하며, 그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인 연대의 전망을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10주년사업을 통해 결집된 국민역량이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를 되살릴 새로운 국민운동의 어린 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위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

우선,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전국민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항쟁의 정신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기조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6월 민주항쟁의 승리와 그 고귀한 정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대중 속에서는 6월 민주항쟁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6·29선언을 먼저 떠올리거나, 기껏해야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떠올리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시급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이 전국민적인 것으로 정착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국제적 의의를 확인하고 항쟁 이후 지난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작업(학술대토론회의 개최와 국제연대사업의 전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전국민적으로 기리고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6·10 국가기념일제정운동, 6월민주항쟁주인찾기운동, 6월 10일 전국적 동시다발 기념행사와 대동제 실시, 6·10 기념공원조성과 기념조형물 건립운동, 항쟁관련 자료집·실록 등의 발간, 추모사업, 6월항쟁사적지를 포함한 현대사사적지순례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다.

다음은 21세기를 국민대중과 함께 희망차게 맞고자 하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새로운 결집과 연대의 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대토론회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전역량이 지난 10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공동의 과제에 기반한 결집과 연대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 마련(시민사회단체합동 심포지움의 개최), 다가올 21세기를 국민대중과 함께 희망차게 맞고자 하는 결의를 다짐과 함께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를 담은 21세기 선언의 채택(전국시민사회단체민주지도자연석회의의 개최를 통한 국민장전제정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6월 민주항쟁 10주년사업이 국민적 결집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계기,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것이다.

4.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을 생각하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10년 전 6월 민주항쟁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그 10년 전의 항쟁 정신이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민주항쟁의 기본정신은 뒤흠려도 민주, 단결, 참여였다. 6월 민주항쟁은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장기간 고통받고 있던 국민대중이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대의 하에 적극적으로 고도 자발적인 참여를 이루어내면서 지역과 계급·계층을 뛰어넘어 크게 하나됨으로써 끝내 승리했던 항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항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항쟁은 전두환군사독재를 완전히 물리치고 명실상부하게 국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데까지로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한 채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6월 민주항쟁의 기본정신인 민주, 단결, 참여의 정신

이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발전시켜야 할 덕목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해야 할 새로운 국민운동은 10년 전의 국민운동을 용당 계승·발전시켜야 하겠지만,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내용과 형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항쟁 이후 지내온 지난 10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또는 보다 분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소련,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냉전 체제의 와해 이후 자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대전환기에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는 100년 전 열강들의 각축과정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표류하다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뼈아픈 역사와, 50년전 해방정국 하에서 민족적 역량을 올바르게 결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외세에 의해 농락당하

며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감내해야만 했던 통탄스런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찾아온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민족의 통일을 일구어내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물론 이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민주주의를 진정 국민대중 자신을 나라와 역사의 주인으로 만드는 참민주사회(민주주의의 완성)건설로까지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당연히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세움으로써 다가올 21세기의 세계사를 자분이 주도하는 인종간, 민족간, 국가간 먹고 먹히는 갈등과 대결의 역사가 아니라 평화와 연대가 넘쳐 흐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화합과 단결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기에 서있다.

윤 정 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금년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은 7명의 한국 전 일본군 '위안부'에게 국민기금과 정부의 의료복지기금을 전달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게 미리 알렸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알려진 날짜는 1월 10일이고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라는 것이었다. 한국정부측이 물어보아도 시간과 장소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오후 2시 비밀리에 지급한 다음 우리 정부에 사후 통첩한 것이었다.

97년 2월3일~2월 5일에 우리측 방문단이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방문단 구성원:

- 국회의원: 신한국당의원 - 안상수, 민주당의원 - 이미경, 이부영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정옥, 지은희
- 강제연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윤영애, 장완익
- 태평양 전쟁희생자유족회: 김성수, 이희자

방문단 중 네 사람이 관할 부서인 내각외정심의실(内閣外政審議室)을 찾아가 우메다 구니오(梅田邦夫 외정심의관)를 만났다. 이 사람은 작년 10월에 정대협사무실을 찾아와 당시 정신대 할머니 사이에 유포되어있던 소문, "국민기금 200만엔 말고도 정부의 의료복지기금 300만 엔을 현금으로 준다"는 말을 부인했다. 정부의 의료복지기금 300만엔은 "절대로"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2월에 찾아갔을 때 우메다 외정심의관의 대답은 이러했다. 정부가 지불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와 대화를 추진하는 회」에서 지불할 것이라고. 「아시아와 대화를 추진하는 회」는 작년 12월 만들어졌다면서 조직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디있는지 대표가 누구인지 심의실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심의실에서는 국민기금이 건네진다는 것을 한국정부와 같은 날 1월 10일 알았다고 했다. 우리 쪽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에는 국민기금 사람이 하시모토 수상은 편지를 가지고 이미 서울에 와있었는데"라고 물으니 얼굴이 빨개서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여러분이 아시아시피 국민기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일본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도 않고, 배상금도 내지 않으려고 일본국민으로 하여금 동정금을 내게 한 데 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조직을 생각해낸 것도, 그 조직의 운영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인 것이다. 일본정부는 한일간의 모든 배상은 1965년에 처리했다는 입장에서 전쟁범죄의 희생자인 피해자 배상금이 아닌 동정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려니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에 의하면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에게 배상금을 요청한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유린에 속하는 이러한 범죄에는 피해자 개인의 권리는 국가간의 문제와는 별도로, 피해자 개인의 권리는 살아있고 시효가 없다.

1993년에 네덜란드의 반 보벤(Theo van Boven) 박사가, 1994년에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 I.C.J.)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UN의 세계여성대회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증대한 인권에 반하는 죄로 규정하고 일본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사죄와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1996년 4월 UN의 인권위원회에서 쿠 마라 스와미(Coo Maraswamy)특별조사관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쿠 특별조사관은 일본군 '위안부' 를 군대 성노예였다고 규정짓고 국제법상 여러 가지 인권을 위반했으므로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나라의 선준영 제대바대사는 일본이 쿠 특별조사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하게 발언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노동연맹(ILO)에서 위안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생활은 일본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미국의 일본 731부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전쟁범죄자 16명에 대한 미국 입국 불허조치가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정죄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해왔다.

지금도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의 진상을 알 수 없다. 일본이 패전 직후 문서를 불살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희생된 전체 수를 10만에서 20만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았고 혹독하게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대가 진주해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군대가 상황에 따라 그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 로 삼아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대만과 우리 나라 경우는 군 수뇌부가 법령을 제정하여 그 법령에 의해서 행해졌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위안부' 가 싸움터로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조선, 일본, 만주 등의 광산이나 공사장에도 많이 끌려갔다는 것이다.

군대에 와서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고급 관리 중에는 지금도 당시에 조선 여성을 끌어난 사람은 일본의 경찰, 군인, 헌병이 아니라 조선사람들이었다고 말하

는 사람도 생겼다. 사실 끌어난 것은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 업자, 면서기, 이장, 순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말단 조선 공무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물론 이들이 동족을 배신한 책임은 추궁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제도 속에서 말단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국과 같은 서구 나라와 달리 일본은 말단 헌병, 경찰과 관리의 반수를 조선인으로 충당하고 그 조선인으로 하여금 동족을 배반하게 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침략정책이 잔인했고 그중에서도 군 '위안부' 제도는 증대한 인권침해였는데 지금도 일본은 반성할 줄 모른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당시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육체적인 후유증보다 더 심한 병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얻은 병인 것 같다. 피해자들은 속아서, 혹은 폭력으로 붙잡힌 순간부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쓰다가 버릴 소모품, 군수품으로 취급되었다. 일본군의(軍醫) 아소 테츠오(麻生徹夫)는 위안소를 위생적인 공동변소라고 말했다. 중국침략을 결정한 후 일본군은 군인에게 성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조선에서 성경험이 없는 미혼녀를 데려가기로 했다. 좁은 공간에 가두어놓고 최대한 일본군의 성욕을 처리하도록 시킨 것이다. 한 사람에게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이 줄을 섰고 지역에 따라서는 강제로 물린 주사를 놓았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말한다. 자기들은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피해자들은 사람으로서 살 권리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패전 직후에 일본군은 '위안부' 들을 버리거나 자기들과 함께 자결하기를 강요하거나 학살하였다. 귀국할 수 있었던 피해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현재 남한에는 160명 정도가 있고 북한에는 130여명이 있는 줄 안다. 남한에는 등록하

지 않고 생존해 있는 할머니가 더 많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수가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을 것이다. 16, 17세에 끌려가기가 막히는 경험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라. 그들도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놓고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판단력이 약한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국민기금의 성질을 왜곡하여 받기꾼 만든 것이다. 이것은 해방 후 50여년이 지난 다음, 감언이설로 어린 여성을 끌고 간 일제시대의 간악했던 짓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반성을 모르는 일본의 태도를 미루어볼 때 같은 짓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 일본이 바라는 것은 전쟁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기금을 받게 함으로써 전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 세계의 압력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더해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역사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일본군은 중국침략을 결정한 후 우리나라를 병참화하고 모든 자연자원을 철저히 수탈해 갔다. 그리고 남성을 노동력으로 연행하면서 여성을 일본군인의 성욕처리 수단으로 이용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 정책은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동시에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통치하기 쉽게끔 피지배국의 민족혼을 말살하는 정책, 민족말살정책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였다. 필자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일본의 침략통치의 끝간 데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개인차원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민족적 문제로 역사적 문제로 파악해야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쉽게 1945년을 해방의 해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할 줄

안다. 우리가 일본에게는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독립된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침략정책의 골수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하겠다. 그 길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5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해자를 다시 속여서 배상금이 아닌 동정금을 받게 하려는 그 손을 뿌리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동정금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자원해서 간간 공창이 되는 것이요 일본은 죄가 없어진다. 그런 뜻에서 동정금인 일본의 '국민기금' 이 아니라 정성껏 모은 우리의 성금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대협이 「강제연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연대(시민연대)」를 만들어 모금을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의 의미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을 뿌리치는 것이다. 또 중요한 뜻은 돈의 액수에 상관 없이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에게서 해방되자는 뜻이다.

우리의 말과 이름을 없애고 총독부를 짓고 왕궁을 동물원으로 만든 일본, 우리의 강토와 우리의 심신을 짓밟으려던 일본의 50여년 전에 패전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독립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자타에게 알리기 위한 운동으로서 시민모금을 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 독립된 자유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일본과 동등한 선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의 이 운동이 열매를 맺는 운동이 되기를 깊이 바라 마지 않는다.

교사 공무원 단결권,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

유 상 덕(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노동운동 발전과 교육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오신 국제공공노련(PSI), 세계교원노동조합연맹(EI) 대표단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노동법 개정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대표해서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1년 12월 한국이 ILO에 가입했을 때 한국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성장을 반영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업종회의 등 후에 민주노동조합연맹으로 발전하는 노동조합 연합조직들을 탄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전국교직원조합 결성을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들을 해직시키고 100명 이상의 교사들을 같은 이유로 구속시키는 등 심각한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ILO에 가입하고서도 제87호 조약등 주요한 ILO조약들을 국회에서 비준하지도 않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그래서 전교조는 1992년 2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전교조 불인정 및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건'으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그 이후 한국정부는 세계에서 대표적 노동탄압국가로 지목받아 ILO집행이사회, 결사의자유위원회 및 UN사회권위원회로부터 전교조 탄압 중지와 교원노

조 인정의 권고를 수차례에 걸쳐 매년 받아왔다.

특히 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탈퇴각서'를 쓰게 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그나마도 약 200여명은 갖가지 이유로 누락시키면서 복직시키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국내는 물론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로부터 강력한 권고를 받은 바 있었다.(95. 3.)

EI의 전신인 국제자유교원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교직원노동조합(WCOTP)에서도 92년 3월과 6월 전교조 인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발송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고, 93년 9월에는 EI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한 조직으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

95년 9월,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교사 공무원 단결권 인정 여부가 OECD 가입의 선결 조건 문제로 떠오르자, 한국정부는 96년 5월 노사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 공무원 단결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96년 10월 11일 한국이 OECD 가입국으로 초청되었을 때 당시 한국 노사개혁위원회의 결과는 국내의 복잡한 정치적 역관관계로 인해 극히 불투명했다. 따라서 OECD-TUAC(노동자문위원회)은 한국의 OECD 가입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 정부에 노사개혁위원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노동법의 주요부분(제3차 가입 금지, 복수노조 금지, 교사 공무원 단결권)을 ILO규범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현 국회회기 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이 OECD에 가입을 하고, 96년 11월 노개위에서 노동법 개정안 1차 논의가 마무리되었는데 결과

적으로는 노동법의 주요한 부분들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의 인정, 교원노조의 인정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부로 넘겨졌는데,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는 유보되고 교사의 단결권은 더욱 심하게 예폭된 채 그나마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고 나머지 법안들은 주로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된 채로 예폭되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96. 12. 26.).

이 발표문에서는 예폭된 정부의 교사 공무원 단결권 문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정부의 그와 같이 완고한 논리는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여, 본 심포지움의 논의 전개를 돕고 아울러 올바른 법개정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교사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정부안의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하고 있다. ILO조약 87호 9조에서는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군대와 경찰의 경우도 국내법으로 엄격히 그 제한 범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1953년 노동법 제정 당시에는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 및 소방관리'를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ILO 기준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 후 교사 공무원의 노조 결성을 5.16쿠데타로 짓밟은 후 1963년에 "공무원

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 등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박탈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사회민주화운동과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의 성장의 결과로 1989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89년 3월 제145회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 임시국회에서는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교원노동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약 23,000여명의 교사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는 것을 보고 수많은 토론을 거쳐 교원노조 결성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노동법이 비록 교원노조를 부정하고 있지만 교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기본권이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전교조가 한국정부의 흑심한 탄압을 받고 지난 8년간 겪어온 사정은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는 바이다.

1996년 11월 노사개혁위원회가 교사 공무원 단결권 문제를 노사간에 합의보지 못하고, 그중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최종안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는 제2차 제도개혁과제로 넘기고, 교원에 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교원의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개혁위원회의 안을 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보면, 공익위원들의 노력마저 외면하고, 기존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1) 기존의 교육회를 복수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

고(지금까지는 단 하나의 교육회만 인정하되 노조는 불허하고 있음)

(2) 시·도 교원단체는 관할구역 교원의 1/5이상, 연합교원단체는 10개 시·도 이상의 교원단체가 회원이어야 등록할 수 있으며(이는 극심한 단체결성의 자유 침해임)

(3) 교섭·협의를 상대방인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등록허가 및 취소권을 가지며(교섭권의 부정)

(4)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여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만 협의할 수 있고(교육여건, 교육정책 및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활동을 제외하여 단체활동의 폭을 제한)

(5) 교원의 단결활동에 관한 침해행위를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은 두지 않음

(6) 그나마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이 법안조차도 아예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가 아닌 복수교원단체조차도 부정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이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정부의 조치에 심히 분개한다. 우리는 최소한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야당총재 시절에 앞장서서 개정했던 1989년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법률 수준으로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 래야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OECD 가입국으로서 교사 공무원의 국제적 수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3.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정권축의 논리

정권축이 이토록 완강하게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을 분석해보자.

(1) 법률적 논리-전체에 대한 봉사자, 특별권력 관계론

1992년 4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직 사유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판결에서 동법이 헌법 제3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공무원인 임용주체가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 그 직무수행상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그리고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이하 생략)

현대 국민주권국가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이며, 공무원이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지위와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지위는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임면과 신분제에 관한 제반 권리는 전적으로 정부등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국민)가 아니라 '국가기관' 자체이다.

또, 공무원에게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면 그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이 손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역대 정권이 교사와 공무원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해 그야말로 공익성과 중립성을 해쳐온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공무원노동의 공익성과 중립성은,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공익성과 중립성을 공무원들의 자주적인 단결활동을 통해 보호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위와 같은 특별권력관계론에 의거한 공무원의 단결권 부정은 나찌즘 하의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온 논리이며 국민주권국가의 기본권에 배치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다.

(2) 교사론적 논리-성직론

정부가 특히 교사에 대해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주된 논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이 깊이 뿌리박힌 한국사회에서 교사는 성직에 가까우므로 일반노동자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 관념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선생)와 작업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기본권의 문제는 일반적 관념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법률적 관계, 즉 임금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나의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

또한 위와 같은 관념적 판단은 오히려 전통적으로 노동을 천시해 온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노동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노동이란 어떤 대상에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적 활동이다. 여기서 노동의 대상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까지도 될 수 있다. 교육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엄연한 사회적 노동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법적으로 임금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며 사회적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이다. 교사의 직책이 성스럽다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노동'의 가치를 보다 높이 평가하는 데 사용되면 몰라도 교사의 정당한 기본권을 제약하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교조가 한국사회에서 교사가 노동자임을 선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통적으로 노동에 대한 천시 풍조가 깊이 뿌리박힌 우리 사회에 노동의 신성함을 깨우치는 교육적 역할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

에서 전교조는 교사로서 집단적으로 성스러운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3) 정영상의 논리-교사 노동권 인정 문제와 컨리해고제의 결합

사학재단 경영자나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사 노동기본권 문제는 정리해고제와 결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첫째, 학교는 산업체에 필요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가 기업경영의 원리에 맞아야 하고, 둘째, 기존의 타성에 쫓은 교직사회의 풍토는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의 교육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이를 정리해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는 논리가 깔려 있다.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 없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강행되어 그 본질이 변형된 인력개발론에 근거한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은 수없이 있어왔다. 이는 열린교육으로 표방되는 각종 정부지원을 받는 교육개혁 정책 속이나 혹은 교육정보산업이 의도하는 학교의 변화모델에서도 일관되게 경계해야 할 관점이다.

그러한 의도를 가진 교육개혁을 이유로 기존 교직사회의 타성을 정리해고 형태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직사회의 타성은 그간 교원들의 교육권적 기본권(예를 들면 교과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이 국가에 의해 박탈당하고 지시명령 위주의 입시교육에만 내몰린 데서 온 결과이다. 교직사회의 활기와 수준은 교원들에게 올바른 교육권적 기본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자주적인 단결활동을 통해 스스로 높이

도록 해야 가능한 것이다.

(47정치 상황력 논리- 분단체제라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96년 11월 노사개혁위원회의 노동법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가서 차관급 실무자회의가 열렸을 때, "교원노조는 한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와 우리를 놀라게 했다.

89년 전교조 결성 이래 전교조를 부정하려고 가해진 일련된 공격은 '좌경 용공' 이데올로기 공격이었다. 정부가 일관되게 교사 공무원의 노조결성에 반대하는 이유로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것은, 교육을 분단체제의 유지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 교원노조 인정 문제가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문제로 되는 한, 이는 합리적인 논리의 문제를 넘어선 정치역학관계의 문제가 된다.

교사 공무원 단결권 인정 문제가 정치역학관계의 문제가 되면 앞에서 분석하고 논박한 법리적, 교사론적 혹은 경영학적 논리들은 종속적 변수밖에 되지 못한다. 실제로 노태우 정권 시절 현직 노동부 장관이 사석에서이지만 "전교조 문제는 힘의 문제이다"고 솔직히 털어놓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사실 교사 공무원 단결권 인정문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문제였다.

1960년 4.19혁명 후 집권 자유당이 붕괴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교사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했었고 이의 법적인 인정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방치 법무부에서는 찬성을 했으나 문교부는 반대했다. 그러다 5.16쿠데타로 노조는 해체의 비운을 맞는다.

1989년 전교조의 결성은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발

전된 사회운동의 결과물이다. 87년투쟁의 결과 여소야대의 국회가 성립됨에 따라서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인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및 노동운동, 사회운동이 정권교체에 실패하여 결국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마저 무산되었다.

1997년 현재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변화에 맞춘 산업구조 조정정책과 노동운동의 발전(민주노총의 결성과 투쟁)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사관계는 자본과 국가권력(그중 특히 수구적 보수정치세력)에 대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이를 지원,대개하는 야당 정치세력이 각축하여 힘의 우열에 의해 판가름나는 문제이다. 지난 겨울 총파업투쟁은 국민적 여론을 유리하게 획득해낸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전술적 승리로 끝났다. 그리하여 노동법 개정안에서 사라졌던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문제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각축전 속에서 우리의 우방인 PSI, EII 및 각종 교원노조 대표의 지원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여러분들의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이 한국에서 노사관계가 단순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고 합리적 설득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맺음말

발표자는 교직원노조 활동을 하다 두 차례 구속된 적이 있다. 구속되어 수형생활을 할 때마다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대단히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 처음에는 교도관들이 교사여서 그렇게 친절히 대하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교직원노조 결성을 해서 탄압받고 있기 때문에 잘해준다는 것이었다. 그들

은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공무원인 교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자기들 교정직 공무원들도 언젠가는 결성하게 될 공무원노조의 앞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전교조는 현재 15,000여명의 정규회원과 약 30,000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하여 비록 법외노조 형태이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는 전국에 16개 시·도지부와 157개 시·군·구지회를 가지고 있다.

그간 전교조가 교육개혁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실제로 정부 교육개혁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교육예산 GNP 5% 확보,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교육지방자치제도의 내용 등 전교조가 그간 꾸준히 주장하였던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들이 적지 않다. 또한 전

교조로 인해 교원의 근무조건, 임금 및 교육환경이 간접적으로 향상된 것이 많다.

그리고 이번 노사개혁 국면에서 교사 공무원의 단결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도 그간 탄압을 받으면서도 실제로 자리잡고 있는 전교조 조직 때문이다.

이제 산업구조조정과 교육개혁의 시대를 맞아 전교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판적 입장에 선 법외노조가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합법적 공간에서 보다 활발한 교육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민주노동운동의 한 주체로서 사회개혁에 앞장서고, 밖으로는 세계교원노조총연맹의 한 주체이며 국제노동운동의 한 파트너로서 교육개혁과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민변 정보통신위원회

수 신: 정보통신부장관

종로구 신문로 1가 126번지

발 신: 민변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 국가 정보통신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귀 부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 다만, 지난 1. 11.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그 시정을 구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니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 제53조 제3항과 관련하여 제16조 제2항을 신설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를 ①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 제한조치를 진행한 검사,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불온통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②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16조의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에 대한

통신의 취급, 거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건의하는 경우로 나열하고 있다.

2. 위 개정규정의 형식과 악용우려

가. 위 개정규정은 형식상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권이 부여되어 있는 전기통신 거부 등의 명령권을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신청이나 건의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

나. 하지만 법령은 그 형식보다 운영의 실질이 중요하며, 우리는 그동안 법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수많은 법률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위 규정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책임을 제한한다기보다 수사기관과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 기관들에게 직접적인 통제권을 부여한 근거규정이 될 것을 우려하며, 나아가 법률의 위임근거가 불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법률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먼저 위 개정규정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에서 새로운 권한을 창출하거나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은 통신 거부명령권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였을 뿐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비록 위 개정규정이 수사기관의 '신청' 또는 윤리위원회의 '건의'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른바 불온통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힘든데다, '불온'에 관한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나 윤리위원회의 요구를 정보통신부장관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위 개정규정은 실질적인 권한의 이전규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명령권)의 위헌소지

가. 전기통신역무는 이제 개인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없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 예컨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이 보장이란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경제활동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른바 '필수 서비스'이다. 그래서 법 제3조 제1항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급을 중

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1조 제7호), 국민의 필수적인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인 제한조치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 결국 위 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포괄적인 제한권을 부여함으로써 애매한 '불온통신' 규정과 결합하여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많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제한적인 경우에 조심스럽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불온통신'의 의미와 범위를 분명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위 명령을 시행할 때 해당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해당자에게 이의 내지 항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 수사기관 등에 그 권한을 위임할 것은 아니다.

5. 수사기관 등의 권한 강화와 악용의 여지

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개정규정은 수사기관과 윤리위원회에 새로운 표현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법원의 영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나아가 통신 제한조치를 취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통신행위 자체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부여일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가능하면 여러 형태로 묶어두고 수사를 하고자 하는 수사기관

의 속성상 이 권한의 남용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수사기관에 대하여만은 유독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예의를 설정하여 놓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 등 다른 어떤 기관의 통제도 없이 자신의 권한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또한 우리는 윤리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권한에 대하여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업무권한인 법 제53조의 2 제4항 제2호 소정의 '심의' 권한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이른바 사후검열)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윤리위원회는 현재 자체 심의규정에 의하여 음성정보와 비음성정보중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전심의의 의무화하고 있고 실제로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행위로 즉시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위헌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다시 '모든 통신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통신제한조치권'(개정규정은 건의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을 부여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사전검열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6. 따라서 위 개정안중

위 개정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고, 새로이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규정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위 개정규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국가보안법 무죄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판결

사 건 96노2721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이 광철, 무직
560502-1489315

주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593의 5
본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34의 3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최찬영

변호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11. 12. 선고, 96고합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 그 죄질이 아주 나쁜 뿐만 아니라 범행일체를 부인하여 그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위 피

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1)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의 류낙진을 1992. 8. 경부터 1993. 5. 9. 경까지 서너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이른바 혁명의 전위조직 구국전위(이하 구국전위라 함)와 관련하여 그 강령·규약 등을 제시받거나 설명을 들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입을 권유받은 바도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구국전위에 가입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93. 6. 경 위 류낙진과 회합하거나 그에게 순창농민회합동에 관하여 보고한 바도 전혀 없다.

(2)양행부당

실사 위 피고인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수한 점등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 8. 14. 광주보통군법회의에서 포고령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1. 27.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고, 다시 1983.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4. 2. 8.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1985. 6. 경부터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기획위원, 전주새길청년회 준비위원장,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집행위원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전북연합 중앙위원 등으로 각 활동하던 지인 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노동자, 농민, 진보적인 청년 학생들이 연합하여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미제에 예속된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한편, 남한 내 친북 동조세력 및 재야인사, 운동권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인물을 포섭, 남한내 지하당 구축을 위

한 활동을 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① 1992. 8. 중순 일자불상경 전북 순창군 쌍치면 소재 농가에서 개최된 순창농민회 하계수련회에 강사로 참석하여 「한국 근 현대사 및 정세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후 뒷풀이 모임에서 역시 강사로 초빙된 공소의 류낙진(1995.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8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을 만나 인사를 나눈 이래 1993. 5. 8.까지 사이에 위 류낙진의 집 등에서 수회에 걸쳐 만나 서로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농민문제, 재야단체의 활동상황 및 향후방향, 대중운동가의 자질, 통일운동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여 공통의 인식을 지녀오다가,

1993. 6. 초순 일자 불상경 위 류낙진의 집에서, 그로부터 그가 가입하여 활동중인 구국전위에 관한 설명과 함께 필사본으로 요약 정리된 '혁명의 전위조직 구국전위'라는 제하의 문건을 건네받아 주석에서 이를 읽어본 바, 그 내용으로,

*강령이

“조국의 남반부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목적 밑에 창립된 우리 전위조직 구국전위는 우리의 성스러운 대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개조 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과감히 투쟁할 것이다”라는 것을 서두로 10개항의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규약이

“제1장 지하전위조직 구성과 명칭
제1조 조국의 남반부 혁명을 위한 전위당은 철저한 비합법적 지하조직이다. 3형태의 중앙조직과 그 아래에 단선으로 연계된 3형태나 2형태의 지국조직을 두며 지구당 조직밑에는 기층조직으로서 2형태의 세포조직을 둔다. 지하당 조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혁명의 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소수 김일성주의 정수 분

자들로 구성하며 본 지하당 조직의 이름을 구국전위로 호칭한다”라는 것을 서두로 제9장 부칙까지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피고인이 이에 가입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인 위 구국전위에 가입하고,

②1993.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류낙진의 집에서, 그로부터 순창농민회 활동상황과 그 전망에 관한 질문을 받고,

- 동농민회는 현재 쌀개방 반대를 이슈로 투쟁 중이고 향후에도 범국민적 집회를 통해 운동단체로서의 세력화를 계획하고 있다.

- 이선형, 최형권 등이 뒤에서 농민회를 잘 지도해 나가고 있고 UR반대, 쌀수입개방반대를 현안문제로 지난 2월에도 서울에 올라가 쌀수입 반대 시위를 한 바 있다.

- 앞으로도 각 대학 및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에 있다.

- 순창농민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단결력이 높고 군민수가 적으며 오지이지만 청년회원들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 이선형과 최형권이 초창기부터 열심히 해와서 다른 군단위 농민회보다 운영이 되는 편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자,

위 류낙진이 농민회 활동의 문제점에 관하여,

- 현재 농촌은 이농인구가 늘어나고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운동의 동력으로 보기에는 어설픈 실정이고, 인건비가 비싸게 먹혀 이익이 없으며 빛이 늘어가고 있고 극소수 남아 있는 젊은 층은 노총각들이고 현재로서는 농촌 문제 해결의 대안이 없다.

- 사실 농민들은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면 통일문제, 기타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투쟁은 이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

-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

하며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농촌봉사활동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 이번에도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춘계 농촌봉사활동차 내려 왔는데 앞으로 이런 농활은 각 대학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학생, 농민이 서로 연대하면 운동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한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6. 5. 8. 안전기획부내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310쪽 이하)와 같은 해 5. 9.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0쪽 이하)에서 위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은 취지로 부인하다가, 같은 해 5. 14.자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79쪽 이하)이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안전기획부에서 자백한 것은 그 당시 수사관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를 피고인이 대필하는 형태의 짜맞추기 수사라 “사실 여부를 떠나 종전에 안기부에서 발표한 대로 구국전위에 가입, 활동한 사실과 금 100만원을 류낙진으로부터 수수하였음을 시인하면 불구속 수사와 함께 기소유예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기석방 회유에 빠져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으로서 실제적 진실과는 다르며, 앞에서 본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이 구국전위에 가입하거나 위 류낙진에게 순창농민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 회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1994. 6. 경 구국전위사건에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의 TV 보도를 본 후, 자신이 서너 차례 위 류낙진을 만난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붙잡히면 구국전위사건에 연루될 것이 겁나 1995. 10. 경까지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그 후부터 1996. 5. 8. 지수할 때까지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경찰이나 안전기획부에서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피고인을 구속하여 억지로 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검찰이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적용법조 중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를 삭제, 변경하고, 제 3, 4항을 철회한 것만 보더라도 구국전위사건에 피고인이 무관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후 ①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②증인 류낙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③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진술 기재, ④검사 작성의 류낙진, 안재구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진술 기재, ⑤서울형사지방법원 94고합1398 판결 사본, 같은 법원 94고합1351 판결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증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라. 당원의 판단

①먼저 반국가단체가입의 점에 대하여 본다. 이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이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위 류낙진과 안재구의 진술 및 이에 기초한 위에서 본 판결사본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두 사람의 진술을 중심으로 살피보기로 한다.

먼저 위 류낙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993. 1. 경 류낙진은 전주쪽에서 통일운동하는데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공소의 안재구의 제의를 받고 자신이 그에게 피고인의 신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때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알고 있던 경령 사항 등을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위 안재구에게 이야기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과 자신이 1993. 6. 경에는 만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5.초 경 마지막으로 만났으며(검사의 주신문에서는 1993. 6. 경에 만났다고 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이를 바로 잡고 있음이 보인다. 공판기록 124쪽), 그 당시 피고인에게 구국전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구국전위의 강령·규약 등을 보여 준 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피고인이 구국전위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진술은 안전기획부에서 조사 당시 억압된 심적 분위기가 연장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류낙진은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자신의 안전기획부에서의 진술을 답습하다가,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이르러 공소의 박화국 등에게 구국전위의 강령·규약 등이 담긴 필사본을 보여주면서 조직의 유형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위 구국전위에 가입시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안재구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종전 검찰 진술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구국전위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면, 위 류낙진, 안재구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구국전위에 가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류낙진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전체적인 취지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고 있어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판결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구국전위와의 관련 부분이 일부 언급되어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위 류낙진, 안재구 양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두사람의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위 두사람이 구국전위를 결성한 후 피고인을 이른바 인입대상(포섭대상)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두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에서 정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구국전위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거나 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②나아가 국가기밀누설의 점과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원이 믿지 않는 류낙진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이 1993. 6. 경 위 류낙진을 만나 그에게 순창농민회의 활동사항을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결국 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류낙진에 대하여 그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회합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한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법 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의 주체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순창농민회 활동상황과 같은 내용이 과연 국가기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제①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91. 5. 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기밀'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면 '기밀'이란 '더없이 중요하고 비밀한 일. 특히,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국가기관이나 기타 조직체의 중요한 비밀'((주)동아출판사 1993.판 동아새국어사전 368쪽 참조)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 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

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951판결, 1994. 4. 15. 선고 94도126판결, 1995. 9. 26. 선고 95도1624판결 등 참조)는 취지로 폭넓게 국가기밀의 개념을 정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론은 '국가기밀'이라는 문언의 내재적 한계 내지 문외적(文意的) 한계를 훨씬 벗어 나고 '기밀'의 실질적 요건을 털어버리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일반 국민에게 무엇이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법적용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 적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결국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위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 93헌바34,35,36결정 참조)고 당원은 판단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위에서 본 이 사건 순창농민회의 활동사항은 도저히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항소논지는 이유 있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불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미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거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2. 20.

재판장 판사 김인수
판사 박현순 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강민규

전자주민카드 관련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
대표자 회장 최영도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표시

1. 1995. 3. 15.자 "주민등록증 갱신 기본계획", 이에 따른 세부계획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정보
2. 1995. 4. 18.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민등록증 갱신 기본계획"에 관한 정보
3. "주민등록증 갱신 기본계획"에 관한 일체의 문서 등의 정보
4. 전자주민카드사업중 1996년도에 발급센터 구축, 업무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예산의 세부사용명세와 이 사용예산은 1996년 예산안중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였는지 그 명세(예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 항목의 얼마중 얼마) 등에 관한 정보
5. 1997년 전자주민카드사업중 카드구입 및 발급, 발급센터 구축, 운영망 구축 등에 사용할 예산의 세부사용명세와 이 예산은 1997년 예산안중 어느 항목에서 인출·사용하는지 그 명세에 관한 정보
6.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참여할 전담사업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정보
 - ①전담사업자를 선정할 사업분야 명세서(카드제조, 카드발급기제조, 칩제조, 카드판독기, 중앙전산기, 휴대용면허확인기 등)
 - ②사업자 선정의 기준과 선정일정
 - ③이미 시행한 각 사업별 전담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입찰참여업체에 관련된 서류 일체
 - ④이미 확정된 각 사업별 전담사업자(참고 : 전자신문 1996. 12. 16.자 기사 '기아정보서 전자주민카드 영상 입력시스템 공급권 수주', 전자신문 1996. 12. 14.자 '삼성전자 주민전산망용

PC납품권 획득' 등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⑤구매할 주전산기의 사양과 기술적 수준에 관한 일체의 서류

7. 전자주민카드의 1개당 예상가격과 산출근거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

8. 전자주민카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조원 이상이라고 산출한 근거서류, 한국전산원이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보고한 보고서(투자에 비하여 23.5배의 높은 경제적 실익이 있다는등의 내용) 등 관련 정보

9. 주민망 설치계획, 관리계획, 주민망 사용계약서 등 주민망 관련 일체의 정보

공개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청구이유 및 사용목적

1.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여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단체로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00여명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
2. 정부는 내무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1998년부터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7개 증명서를 통합하여 이를 IC칩을 내장한 전자카드에 수록하는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고 전 국민에게 그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하지만 우리는 이 제도가 모든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헌법이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적법절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제도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거친 이후에야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나아가 분명한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고 전담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4. 이에 청구인은 이른바 '전자주민카드'의 발급계획이 헌법과 법률에 적합한 것인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의 집행과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법,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연구, 조사하고자 하나, 관련된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 조사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 청구를 하는 것임.

정부정책은 법률가 단체 등 관련 전문가단체들의 관여에 의하여 그 효율성이 제고되고 적법성의 보장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니 만큼 조속히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 주기 바라는 바임.

1997. 2. 3.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자 회장 최영도

내무부장관 귀하

날치기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회신) 촉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회신) 촉구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
 대표자 회장 최영도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정부 2청사

1. 발신인의 내용증명(1997. 1. 16.자 서울 서초3동 우체국 등기번호 제8186호)과 관련입니다.

2. 발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97. 1. 14. 귀하에 대하여 서울 서초3동 우체국 등기 제8186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우편으로 별첨과 같은 정보 일체를 공개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귀부는 1997. 1. 16.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1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발신인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여주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신인은 조속한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서면을 보냅니다.

4. 만약 이에 대하여도 귀하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회신조차 하지 아니한다면 바라는 바는 아니으나 부득이 민사·형사·행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고 있음.

참고로 공보처장관으로부터는 이미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부의 호의로운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1997. 2. 18.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자 회장 최영도

노동부장관 귀하

모소가 없는지 연구, 조사하고자 하나, 관련된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 조사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 청구를 하는 것임.

별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표시

1. 1996년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설치된 이후부터(특히 1996. 12. 중순 정부의 노동관계법(안) 국회제출 및 같은 무렵 국가안전기획부법개정법률안의 국회 계류 이후) 현재까지 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공부처 등 타 부처와 공동으로 국내외의 신문, 방송, 라디오, 통신, 케이블TV, 잡지, 영상, 비디오테이프 등에 위 법률(안)의 내용 등에 관하여 광고(홍보 및 의견광고 포함, 이하 같다)를 한, 또는 국내외의 광고물(홍보물 포함, 이하 같다)을 작성, 제작, 배포한 것과 관련된 정보 일체.

(광고의 목적 및 기획, 광고의 대상매체와 그 횟수, 광고의 일시와 방법, 광고의 내용, 광고에 대한 비용지출 및 그에 관한 예산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 광고물의 작성, 제작, 배포의 목적과 기획, 광고물의 제작 종류 및 수량, 광고물의 내용, 광고물의 배포현황 및 방법, 광고물의 작성, 제작, 배포 등에 지출된 비용 및 예산집행의 구체적인 내역 등 포함)

2. 위 광고에 인용된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원문 보도자료 및 그에 대한 번역 내용과 각종 통계자료 등에 관한 정보 일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회신) 재촉구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
 대표자 회장 최영도
 피청구인 국회의장 김수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 발신인의 정보공개청구(1997. 1. 4. 자)와 관련입니다.

2. 발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97.1. 4. 귀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지난 1월 22일에는 촉구서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하께서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의 수장다운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자세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마지막으로 정보의 공개를 촉구하오니 오는 3월 7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이번에도 귀하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회신조차 하지 아니한다면 발신인은 발신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인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귀하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민사.형사.행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호의로운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끝.

1997. 2. 28.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자 회장 최영도

국회의장 귀하

별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표시

1996. 12. 26. 개의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1.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한 내용의 문서.
2. 국회의장이 오후 2시로 법정되어 있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하기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개의시를 협의한 것과 관련한 문서.
3.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개의시간·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지 및 위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위 본회의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문서 일체.
4. 국회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한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위 본회의 소집을 고지한 것과 관련한 문서 일체.
5. 위 본회의의 개의시부터 산회시까지 회의록 및 회의장면을 찍은 비디오테이프 등 자료 일체.
6. 의결된 법률(안)을 그 공포를 위하여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된 문서 일체.

사업 및 업무보고 (97년 2월 1일~97년 2월 28일)

1. 모임현황 보고

회원 현황 : 본부 185명, 부산·경남지부 27명

총 212명

1월 가입 3명 - 고태관, 오승진, 장운영

2. 모임주요활동 및 사업보고

가. 1월 정기 월례회 및 임시총회 개최 / 1. 31.(금)

18:30 민변 사무실

- 신입회원 가입 승인 / 고태관, 오승진, 장운영 변호사

- 북한 쌀보내기 경과 보고 / 김인희 회원

-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한 경과 보고

나.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발표 / 2. 25.

다. 김영삼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 특별담화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

- 2. 26.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시민·사회·종교단체연석회의

-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들어가며

라. 한보사태대응을 위한 임시소위 구성 / 2. 10.

- 위원장: 박인제

- 간사: 김석연

- 위원: 최승수, 이유정, 조광희 회원

마. 통일특별위원회구성 / 2. 3.

바. 일본 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2. 10.

사. 정보통신위원회 구성

아.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개최

- 2. 27.(목) 10:00 - 19:00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

- 주최: 민주수호법대위

- 주관: 민주법학연구회, 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교회인권센터

- 제1부: 민주사회에서 공안정보기구의 올바른 위상과 바람직한 통제방법

- 제2부: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각국의 법적, 민주적 개혁노력 - 내용과 추세

- 제3부: 공안정보기구의 법치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시민적 투쟁 - 각국의 사례와 전략

자. 지방지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간담회 개최 예정 /

3. 8.(토) 14:00 민변 사무실

차.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 "이 시대는 아직도 열사를 요구하는가" 개최

- 주최: 연대회의(민변 후원)

3. 변론배당

가. 구광희(동국대 4년): 한총련 중앙집행위원 - 국보/유효석 회원

나. 최우정: 철거민 민병일 책임자처벌에 대한 집회 참가 - 집시 등 / 조광희 회원

4. 상임위원회 보고

가. 기획위원회

- 회의: 2. 20.(목) 19:00 민변 사무실

- 검.경 중립화에 대한 자료집 발간 추진키로 결정

나. 회원위원회

- 1월 정기 월례회 겸 임시총회

- 신입회원가입: 고태관, 오승진, 장운영 회원

다. 출판·홍보 위원회

- 이달의 민변 1·2월 합본호 발간 및 발송 / 2. 27.

라. 국제연대위원회

- "The Reporting Obligation under Article 40 of the ICCPR" 학습

5. 상설특별위원회

가. 노동위원회

- 매주 수요일 12시 회의
- 전국노동변호사단 구성 논의
- 노동사건 기획소송 논의 /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검토

나. 언론위원회

- 노동관계법 일간지 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보처 불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하기로 함.
- 개정노동법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 회신 촉구서 발송 / 2. 18.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노동부 회신(거부) 접수 / 2. 24.
- 의무부상대 5.18관련 한·미간 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 한일수교회담 관련문서, 30년 경과후 문서공개규정에 대한 일본의 공개보류요청에 대하여 국제연대위원회와 언론위원회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다. 경제정의위원회

- 회의: 2. 4.(화) 19:00 시민종합
- 한보비리사건 관련 대응방안 논의 금융결제원에 대하여 부도공시지체책임에 대하여 최승수, 차규근 위원이 연구·검토기로 함.
- 회의: 2. 18.(화) 19:30 시민종합
- 조세제도의 개편에 관한 참여연대 조세연구팀 논

의내용 발표 / 김진욱 회원

라. 환경위원회

- 회의: 2. 12.(수) 20:00 민변사무실
- 여천공단 관련자료 검토 및 대응방안 논의 / 공단 주변 질병환자들의 손해배상소송제기 검토
- 울진원전 5, 6호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 및 행사고발 여부 검토

6. 임시특별위원회

가. 형사(무죄)사건 자료집 발간팀

- 김남수, 김순희, 배병성, 이창복, 이공순, 이종우, 홍성담, 김보은 사건 최종 편집회의 중

나. 통합전자주민카드 대책 특별위원회

- 이한영씨 주소 유출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 2. 28.

다. 일본문제 대책특위 구성

- 2. 10 집행위원회에서 지난해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문제들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문제대책특위 구성.
- 위원장: 임종인 회원
- 간사: 최은순 회원
- 위원: 김선수, 김우진, 기인희, 박성호, 백승현, 장원익, 조광희, 최승수, 최봉태, 한택근 회원, 도두형 변호사

라. 통일위원회 구성

- 위원장: 송두환 회원
- 간사: 김인희 회원
- 회의: 2. 19.(수) 12:00 민변 사무실
- 의부강사 초청강연 결정
- 북한 쌀보내기에 대한 정당성 원고 게재 건 논의

- 회의: 2. 26 (수) 18:00 민변 사무실
-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발제 / 정연순 회원

다. 정보통신위원회

- 위원장: 김기중 회원
- 위원: 김도형, 정연순, 조광희, 이원재, 백승현 회원
- 회의: 2. 15.(토) 12:00 민변 사무실
- 정보통신검열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 번역 결정

바. 한보사건 대책위원회

- 위원장: 박인제 회원
- 위원: 김석연, 최승수, 이우정, 조광희 회원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발표 및 보도 자료 배포 / 2. 19.
- 수사결과에 대한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발송 및 보도자료 배포 / 2. 21.
- 정보공개청구: 은행감독원, 통산부, 건설교통부-참여연대 공동 / 2. 26.
- 회의: 2. 26.(수) 12:00 민변사무실 / 참여연대 공동
- 역할 분담: 1. 민변 - 법률검토 및 소송수행①김석연, 차규근, 최승수 회원- 기획소송 담당 ②이우정 회원 - 정보공개요구(국민회의 국정조사요구자료 검토) ③특별검사제도 개선 문제 - 사법위원회에 위임 하기로 함. 2. 참여연대: 소송원고 모집 및 자료수집

7. 회원동정

가. 최영도 회장 사무실 이전
주소: 서초구 방배동 1808 안석빌딩 3층
전화: 3476-4343 팩스: 3476-4340

나. 박세경,전해철,장원익, 임종인 회원 / 합동법률사무소 개소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6-9 지산빌딩 4층
전화: 525-5437 팩스: 525-5439
임종인 회원 사무실은 변동없습니다.

다. 박영립 회원 사무실 이전 / 법무법인 화백
주소: 서초구 서초동 1717-16 대신빌딩 4층
전화: 596-6000 팩스: 596-6060

8. 사무국동정

가. 출판·홍보위원회 변우성 간사 퇴사 및 후임 최미희 간사 입사 / 2. 24.
나. 국가보안법 담당 지은경 간사 입사 / 2. 10.
다. 김은영 간사 득남 / 2. 15.
라. 지은경 간사 국제인권단체 인권연수차 출국 / 3~4월, 제네바

9. 공지사항

가. 민주화운동과 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 학술 세미나
- 3. 6.(목) 15:00 성공회 대성당 대회의실
- 1주제: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이념대립 과정과 민주화운동(개괄) / 발제 김봉우
- 2주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열사·희생자의 미 조명 / 발제 김상용

성명서

김영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담화에 대한 논평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 시점에 발표된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담회에서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 근거한 단호한 결단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에서 우러나오는 발상의 근본적 전환을 기대하였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또다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현재의 난국의 근본적인 책임이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안이한 인식을 지닌 채 상투적인 수사에 머무른 담화내용은 더더욱 실망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변은 다음과 같이 특별담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현재의 난국은 작게 보아서는 작년말의 노동법·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분노한 민심의 이반이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은 물론 이미 여러 차례 의문스런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아들 김현철 씨가 연루된 한보사태로 말미암아 급격히 가속화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우연이나 사고 또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공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자신의 행위이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난국은 크게 보아서는 변화와 개혁을 표방했던 현 정권이 지닌 역사 의식의 부재와 삼당합당에서 출발했던 태생적 한계가 표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담화의 내용에는 마땅히 그러한 일련의 실정에 대한 반성이나 깨우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국민들이 담화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뇌하고 밤을 지새운 한 지도자의 뜻하지 않은 불행과 그 지도자가 자신의 책임도 아닌 잘못들을 지도자다운 또는 아버지다운 덕성을 발휘하여 의연하게 끌어안고 가는 비장한 모습뿐인 것이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하였으나 정작 국민들이 개탄스러운 것은 무엇이 개탄스러운지, 그리고 누가 개탄할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알고자 하지 않는 정치권력의 담당자들인 것이다. 또한, 담화내용에 발표된대로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고 한들 현재의 난국이 타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는 독선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담화 내용 전체에 넘쳐나는 공허한 다짐과 추상적인 반성은 적어도 국민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늘 귀에 따갑게 들어온 내용없는 개혁의 주창이 아니라 안기부법과 노동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비롯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처리 방안이며, 진정한 반성 없는 추상적인 사죄가 아니라 국회청문회와 특별검사제를 비롯한 부패구조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인 것이다.

이에 민변은 김영삼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보다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만이 그동안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동시에 점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안보상의 도전 또한 슬기롭게 헤쳐가는 유일한 길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1997.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영도

이달의 민변 97년 3월호

이달의 민변 97년 3월호
출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7년 3월

다들 알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조차도 이달의 민변을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같은 현실은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은 이달의 민변이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보아하니,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은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달의 민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같은 현실은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지금 국민들이 갈망하는 것은 늘 귀에 파고들고 들어오는 각종 추악한 선전의 차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은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이달의 민변이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달의 민변 97년 3월호

이달의 민변 97년 3월호

발행일 97년 3월 25일
발행인 최영도
편집인 출판홍보위원회
 차병직 박원순 이석태 조용환 조광희
 박성호 이백수 백승현 정연순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천리안 M321
 나우누리·하이텔 minbyun7